

제2565호
2018. 02. 14.

발행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편집인: 공 보 실 장 신 선 애
전화: 3396-4952
(<http://www.junggu.seoul.kr>)

선	기관의장
람	

구 보

● 고 시	
제2018- 11호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2
● 공 고	
제2018-109호 : 불법명의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3
제2018-119호 : 2018년 중구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모집 공고	4
제2018-123호 : 중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6
제2018-124호 :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7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65 / FAX.(02)3396-9024
● 구보는 수시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												
람												

고 시

○서울특별시중구 고시 제 2018-11호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우리구 도로명주소 폐지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02월 14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도로명주소

연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사유
1	서울특별시 중구 난계로17길 20-12	2018.02.14.	건물말소
2	서울특별시 중구 난계로21길 15	2018.02.14.	건물말소
3	서울특별시 중구 난계로19길 11-8	2018.02.14.	건물말소
4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8길 17	2018.02.14.	건물말소
5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22길 18	2018.02.14.	건물말소
6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길 24-10	2018.02.14.	건물철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44)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서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8-109호

불법명의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자동차 소유자가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 요청서를 제출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 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규정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을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8년 02월 14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공고의 명칭** :불법명의 자동차 운행정지 공고

2. **공 고 기 간** : 2018. 02. 14. ~ 2018. 02. 28.

3. **공 고 대 상**

- 자동차등록번호 : 51조43**외 4대
- 소 유 자 명 : 오****탈주식회사 외 4대
- 운행정지 명령일자 : 2018. 01. 01. ~ 01. 31.
- 운행정지 사유 : 소유자 요청

4. **공 고 내 용**

○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 가능하고, 무등록 자동차 운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중구청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02-3396-624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8-119호

2018년 중구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중구에서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양성평등기금을 지원하여 여성이 행복한 중구를 만들고자 다음과 같이 2018년도 중구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을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 2.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총사업비 : 25,000천원

2. 사업기간 : 2018. 4. 1. ~ 11. 30.

3. 지 원 액 : 사업별 5,000천원 이내 (※총 사업금액의 10% 이상 자부담)

※ 서울시 중구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별 사업비 조정 및 결정

4. 대상사업 : 1개 단체 1개 사업(중복신청 불가)

분 야	사 업 내 용
양성 평등 촉진	▶ 양성평등 문화 및 성 주류화 확산 ▶ 지역사회 여성친화 환경조성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 여성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동 촉진 ▶ 일·가족 양립문화 확산 및 저출산 대응 ▶ 여성의 리더십 강화 및 글로벌 역량 강화
여성의 안전 및 건강	▶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조성 (안전 중구 만들기)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 ▶ 여성의 건강관리 지원
취약계층 여성복지	▶ 장애여성, 한부모가정, 여성노인, 다문화가정 등 복지지원 ▶ 취약계층을 위한 취업 및 진로 교육
기타 양성평등 사업	▶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신청자격 및 신청사업수

- 서울특별시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 또는 법인
 - 중구에 소재하고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단체 (법인) 및 여성관련기관
- 신청 사업수 : 단체별 1개, 중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지원 제외 대상

- ❖ 일회성, 전시성 행사 성격의 사업
- ❖ 단체홍보, 법인(단체)설립 기념행사, 법인(단체)월례행사 등 친목 관련 사업
- ❖ 단체 운영과 관련된 경상적 경비(일반 운영비, 여비, 급식비, 사무실 임대료, 회원 피복 구입비, 기념품·시상품 등 선심성 경비)가 주된 사업
- ❖ 국가, 타지자체 등으로부터 중복 지원 받는 사업
- ❖ 순수 종교활동 단체 및 영리 단체
- ❖ 선정단체와 사업실행주체가 다른 단체
- ❖ 주사무실과 상근직원이 없는 단체 또는 단순한 친목 단체

6.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8. 2. 9.(금) ~ 2. 23.(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접 수 처 : 중구청 여성가족과(1층) 여성정책팀

7. 신청서류

- 양성평등기금지원사업 신청서 12부
- 지원사업계획서(사업비 산출내역 포함) 12부
- 법인(단체)등록증 사본 및 회칙(정관)사본 각 12부
- 법인(단체)현황 및 최근 1년간 활동실적 각 12부
- 법인(단체) 임원 및 회원명단 각 12부

※ 신청서 작성 및 제출시 참고사항

- 신청서식은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고사·공고」란 게시
- 신청서류는 A4용지 작성 및 제출서류 일체 전자파일로 별도제출 (담당자 e-mail : ych1024@junggu.seoul.kr)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 등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법인(단체)는 지원금 환수 조치

8. 심사기준 및 결과발표

- 심사기준 : 사업목적 및 지원사업의 적정성, 사업수행능력,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자부담 비율 및 최근 1년간의 여성관련 사업 추진실적 등
- 심사방법 : 서울특별시 중구 양성평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
※ 심의 시 신청법인(단체)의 사업계획서 발표 (PT준비 : 5분 이내)
- 결과발표 : 2018. 3. 15.(목) (예정)
 -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 게시 및 개별통보

9. 사업비 교부 및 정산

-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8조에 따라 일시 또는 월별 교부
-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에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정산결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지원금은 전액 환수조치

10. 기 타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중구청 여성가족과 (☎02-3396-5403)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8-123호

중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중구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2. 14.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가. 부의 안건 : 예산안 1건,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구분	부 의 안 건 명	주관부서 (연락처)
예산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기획예산과 (3396-4912)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 (3396-4513)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여권과 (3396-4755)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여성가족과 (3396-5423)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과 (3396-5622)
동의안	「서소문역사공원 문화·집회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문화관광과 (3396-4642)

나. 기 타

- 상세한 사항은 주관부서 또는 기획예산과 의회법제팀(☎3396-49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8-124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이전에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2월 14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법률 제15295호, 2017.12.26.)으로 신용

카드 자동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납부신청까지 세액공제가 확대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동이체 세액공제대상 확대(안 제10조)

- 세액공제대상에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추가
- 전자송달 납부신청만 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대상으로 추가
- 시행일은 2018년 1월 1일로 함(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3. 6(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참조:세무1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예관동) 전화 : 02-3396-5102, FAX :

02-3396-8695, E-mail : chaewoo@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세무1과(☎3396-510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을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를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① ----- -----.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 -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